

## 「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이주용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제5조)
- 나.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제10조)
- 다.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제18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.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복무선서 등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무원 근무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에 관한

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

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# 4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